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 6. 8 선고 2022가단2694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채윤

변 론 종 결 2023. 5. 25.

판 결 선 고 2023. 6.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2021. 5. 1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11,757,36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1,757,36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13. 11. 15. C에게 3,000,000원을 이자 및 연체이자 각 연 39%, 변제기 계약체결일로부터 4년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런데 C은 원리금 변제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19. D로부터 C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였고, 2017. 3. 21.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소371940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6. 16. 'C은 원고에게 6,913,890원 및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 2017.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7. 7. 5. 확정되었다.

다. 한편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중 2021. 2. 11. 사망하였고,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망인의 처 F, 망인의 자녀인 C, G, 피고는 2021. 5. 1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그런데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인 2021. 3. 17. 이 법원 2021느단72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였고, 2021. 5. 6. 위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되었다.

마. 이 사건 상속재판분할협의를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5. 28. 피고 명의로 2021. 2. 1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C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2/9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행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C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피보전채권액인 11,757,36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1,757,36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따라서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후에 상속포기의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공동상속인의 자격을 가지는 사람들 전원이 행한 것이 되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이는 설사 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약에 참여하여 그 당사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협약이 그의 상속포기를 전제로 하여서 포기자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라고 볼 것이다. 한편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 앞서 본 대로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이를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비록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상태에 있다고 하여서 그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를 쉽사리 인정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총체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다수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 바인데, 위와 같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자신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적용이 있다고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의 출발점이 되는 상속인 확정의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에서의 원고와 같이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C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에 참여하여 그 당사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협약의 내용은 C의 상속포기를 전제로 하여서 C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의 이전인 2021. 3. 17. 행하여진 C의 상속포기 신고가 2021. 5. 6. 수리됨으로써 C의 상속포기의 효과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적법하게 발생한 이상,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찬